

정수유에 국가지정문화재등 []보유현황명세서
[]양도거래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관리번호		-				
제출인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	③ 전자우편 주소	
	④ 주소				⑤ 피상속인과의 관계	
	⑥ 전화번호	(사무실)	(휴대전화)			
피상속인	⑦ 성명		⑧ 주민등록번호		⑨ 거주구분	[] 거주자 [] 비거주자
	⑩ 주소				⑪ 상속개시일	
세무대리인	⑫ 성명		⑬ 사업자등록번호		⑭ 생년월일	
	⑮ 전화번호	(사무실)	(휴대전화)			

정수유에 받은 국가지정문화재등 명세

⑯ 구분	⑰ 작품명	⑱ 작가명	⑲ 규격	⑳ 평가기준일	㉑ 신고액	㉒ 보유 여부 (양도 예정인 경우 양도 예정일 기재)
㉓ 계						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4조제6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5항·제6항에 따라
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등 []보유현황명세서 []양도거래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제출서류	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 제출 시: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양도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※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말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‘㉔ 보유여부’란에는 징수유예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할 예정인 경우 양도 예정일을 기재합니다.